

# 『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11월 17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11월 17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12월 18일

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 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### 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선산출장소장 권 순 형

나. 제안이유

- 국유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개정(2014.9.19)으로 구미시민 다자녀가정,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시설사용료를 감면하여 산림휴양기회 확대 및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함.
- 행정자치부 지방규제 개선으로 자연휴양림 입장제한 및 행위제한 규정이 폐지(2015.8.24.)되어 상위법령에 미규정된 입장제한 및 행위제한 조항을 삭제하여 국민 누구나가 입장하여 휴양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.
- 그 밖에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## 다. 주요내용

- 옥성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및 산림문화휴양관 시설사용료  
구미시민 다자녀가정, 장애인(1~3급), 국가보훈대상자 비수기  
50% 감면 (안 별표 1, 별표 1의2)
- 입장제한 삭제(안 제9조)
- 행위제한 삭제(안 제11조)

## 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 -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5 제2항
  -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
-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기     타 : 해당 없음

## 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최 명 호

### ○ 본 조례안은

- 구미시민 다자녀가정,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시설사용료를 감면하고, 상위법령에 미규정된 입장제한 및 행위제한 조항을 삭제하며,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.

### ○ 주요 내용은

- 별표 1의2의 규정을 개정하여, 구미시민 다자녀가정,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시설사용료를 50%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
- 안 제9조와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입장 제한 및 행위 제한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였음.

## ○ 검토결과

- 본 「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시설 이용자에게 불편·부담을 주는 입장 제한 및 행위제한 조항을 정비하고, 국유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개정에 맞추어, 숲속의 집 및 산림문화휴양관 사용료 감면 대상자인 구미시민 다자녀가정,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에게 50% 감면하는 조항을 추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 론 요 지 : 생략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7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